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주요 개정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가금산업 및 가금농장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동절기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금농장 75건과 야생조류 174건이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방역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제도화 하는 등 AI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 발령 기준 개선

- 3~9월 중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시 지역별(발생지역+역학 관련 지역) '심각' 단계 발령
- 겨울철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3월 이후에도 지속 발생할 경우, 발생 양상 등을 고려하여 '심각' 단계 유지 및 방역관리 지속

◎ 육계 및 육용오리 농장 일제 입식·출하 절차 강화

- 축사별 소유주가 다르나, 소독시설 등을 공동 사용하여 하나의 농장처럼 운영하는 농장(육계·육용오리)에 대한 일제 입식·출하 적용
 - 가금 계열사도 해당 농장이 일제 입식·출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 대형 산란계 농장 통제초소 설치기준 강화(30만수→20만수)

- 농장 통제초소 설치 대상을 2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으로 변경
 - 다만, 통제초소 설치 주체인 시·군에서 위험도 평가 실시 및 시·도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설치·운영 대상 조정 가능

◎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기준 및 체계 개선

- 지난 동절기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상대적으로 많이 발령*하여 초생추 이동 등 정상적인 가금 출하 등에 일부 문제 발생
 - * (20/21년) 9회 발령 → (21/22년) 4회 → (22/23년) 29회(농식품부 발령 기준)
 - 방역지역 내 추가 발생 시, 이동제한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가 명령을 발령하지 않고, 이동제한 상황 점점 강화
- 고병원성 AI 발생 시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거쳐 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신속한 방역조치에 한계가 있어 심의 기준 마련

<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관련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대상 및 기준 >

- ▶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i) 전국 최초, ii) 전국 단위 또는 3개 이상 시도, iii) 36시간 초과
- ▶ 지방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i) 시도 내 최초, ii) 시도 전 지역 또는 3개 이상 시군, iii) 36시간 초과
- ▶ ①·② 외의 경우에는 역학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심의를 받을 수 있음

◎ 살처분으로 인한 오염원 확산 방지 조치 및 살처분 기한 조정

- 살처분 작업 전(前), 축사 내 먼지, 분변, 깃털 등이 축사(농장) 밖으로 비산되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

- 이동식 열처리시설로 살처분 시, 가축방역관에게 열처리 조건(멸균조건)에 맞는 온도 유지 여부 확인 의무 부여
- 24만수 이상 케이지 농장 외 모든 발생농장은 24시간 내 살처분토록 하고 있어 질병간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 * (구제역) 살처분 대상 두수가 많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살처분이 어려운 경우 시도에서 살처분 계획 마련보고, (ASF) 농장 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원칙
- 24시간 내 살처분 원칙을 유지하되, 살처분 대상 두수가 많은 등 불가피할 경우 시·도에서 살처분 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부 보고
 - * 살처분 계획에는 살처분 지연 사유, 완료 일시, 차단방역 조치 등을 포함

◎ 이동제한지역 외 가금농장의 가축분뇨 반출 가능 기간 변경

- 발생 시·도 또는 역학 관련 농장의 분뇨 반출 기준이 발생농장보다 엄격*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및 분뇨 과다 적재 등 문제 발생
 - *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부터 40~60일이 지나면 반출 가능/ (발생 시도 또는 역학 관련)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분뇨 반출 제한(시도 승인** 하에 이동 허용)
 - ** (시·군) 오리농장 분뇨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 관할 시·군의 계획서를 검토하여 위험도 평가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반출 승인
- 이에 가축분뇨 반출 가능 기간을 방역 안정성이 확보 가능한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 → 해당 방역지역 해제 시로 조정

◎ 출하 등이 불가피한 저병원성 AI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기간 변경

- 저병원성 AI 발생 시 14일간 이동제한을 유지하되, 과체중 등으로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조기 검사*하여 이동제한 해제
 - * 시료 채취일로부터 10일 경과 후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AI 정밀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이동제한 해제 가능

◎ 연구·검사기관의 의심축 신고기준 명확화

- 연구·검사기관이 AI 감수성동물에서 H5 또는 H7형 항원(항체) 검출 시, 검역본부 및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신고기준 명확화
 - * (현행)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 → (개정) 감수성동물(닭·오리·칠면조·메추리·거위·돼지·개·고양이 등의 가축과 조류인 플루엔자에 감수성이 있는 야생조류 및 그 밖의 동물)

※ 다만, 야생조수류의 경우 환경부(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도 신고 병행

◎ **입식시험 중 시험가축에서 저병원성 AI 항체 검출 시 절차 마련**

- i) 입식시험 농장에 대한 청소·세척·소독 후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고, ii) 시험가축 공급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가금 또는 환경)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검역본부에 재입식 승인 요청

◎ **보호지역 내 육계 출하 절차 개선** 고시 개정 반영

- 보호지역 내 육계(삼계 포함)에 한해 강화된 방역조치 下 인접 시·도의 출하 농장 계열사 소속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 허용

〈 보호지역 내 육계 출하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 〉

- 출하농장 소재 시도
 - ▶ 출하당일 가축방역관이 축사별 가금 임상 관찰 및 폐사 등 이상 여부 현장 확인
 - ▶ 24시간 내 AI 정밀검사(출하 전 검사 음성) 및 전 두수 출하
- 출하도축장 소재 시도
 - ▶ 출하 농장 소재 시도지사에게 도축장 출하가 현저히 어려운 상황 등에 대한 자료(도축 현황, 출하 규모 등) 요구 가능
 - ▶ 공휴일 도축 원칙, 당일 출하 마지막 도축, 별도 구획 계류
 - ▶ 출하도축장, 출하차량, 어리장 등에 대한 환경검사 실시
 - ▶ 환경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출하차량 및 상하차반 등 역학 관련 인력의 타 가금농장 방문 제한

◎ **예찰지역 내 분뇨 이동 승인 주체 변경 및 이동 절차 신설** 고시 개정 반영

- 예찰지역(~10km) 내 닭 분뇨 이동 시 시·도지사가 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분뇨 이동을 승인 (보호지역은 검역본부장으로 현행 유지)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계획(분뇨반출신청서 및 현장사진 포함)을 수립하여 승인권자(보호지역 : 검역본부, 예찰지역 : 시·도지사)에게 제출·승인

◎ 엄격한 조건 하에 예찰지역 내 오리 입식 제한적 허용고시 개정 반영

- i)강화된 시설과 ii)요건을 갖추고, iii)방역수칙을 준수하며, iv)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 위험도가 낮은 농가에 한해 오리 반입 제한적 허용

예찰지역 내 오리 반입 세부기준

기준	세부기준
시설 조건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라 건축 신고가 된 농장
	● 일반건축물로서 철재빔과 판넬 형태(비닐하우스 농가 제외)
	● 왕겨를 사용하지 않는 고상식 축사/또는 축사내 사육기간 동안 사용하는 왕겨비축장소(왕겨창고 등)가 있고, 왕겨살포기 및 로터리 장비가 출입하지 않음
	● 분동을 하지 않거나, 분동 통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구조
	● 축사내 장비기구 등을 보관
	● 강제환기 시스템 구비
방역 요건	● 농장 간 농장주 및 종사자가 교차 근무하거나 교류하지 않음
	● 농장 간 기구·장비·차량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음
방역 수칙	● 2단계 점검(1차 지자체 → 2차 검역본부) 결과, 소독설비·방역시설 적정 설치 및 방역수칙 준수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상 위반사항이 없음)
지리적 여건	● 철새도래지, 하천, 저수지 등과 연결하지 않음
	● 가금 밀집단지 등과 500m 이상 이격
기타	● 예찰지역 내 반복 발생이 없고, 다발 계열사 소속 농장이 아닐 것

◎ 방역지역 해제 기간 조정(30일 → 28일) 고시 개정 반영

-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방역조치가 완료되고, 28일이 지난 후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방역지역 해제 가능

◎ 야생조류 항원 검출 시 방역지역 설정 방법 변경 고시 개정 반영

- 야생조류 항원 검출지점 3km 내는 발생 당시 방역지역 유지, 3~10km의 경우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을 재설정하고,
 - 당초 방역지역과 추가 방역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은 농장과 마찬가지로 추가 방역지역에 대한 방역조치기간 적용